

# 2019년 식품 품질·위생 단기역량제고 지원업체 모집공고

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중소식품기업 대상 품질·위생·마케팅 분야 단기역량제고 사업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## □ 사업 개요

- 지원대상 : 국산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
- 지원내용 : 전문위원 현장지도 5~8회

지원사업	지원구분	지원한도	자부담금	비고
식품 품질·위생 단기역량제고 (舊 식품멘토링)	일반기업	1,400천원	100천원	현장지도 5회(1회 30만원/6시간)
	우대기업*	2,300천원		현장지도 8회(1회 30만원/6시간)

\* 우대기업 : 식품명인기업, 전통식품품질인증기업, 술품질인증기업,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소관 품평회(김치품평회, 술품평회) 입상 후 3년 내 기업, 농공상 융합형중소기업, 신규창업(창업 1년 이내), 소규모기업(최근년도 매출 1억원 미만),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기업

- 지원분야 : HACCP준비단계 등 7분야 중 1분야 선택 지원

구분	지원분야	세부내용
기술	HACCP준비단계	○ 국내 HACCP 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
	HACCP사후관리	○ 소규모HACCP에서 일반HACCP 전환 심사 대응 등
	식품위생관련법규	○ 관련법규 영업자준수사항, 표시기준 등 지도
	상품개발	○ 상품개발 절차 및 시제품 개발
	품질개선	○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확보
마케팅	상품마케팅	○ 상품 온·오프라인 마케팅 등
	디자인개발	○ 포장 디자인 개선 등

## ○ 지원절차

지원사업 추진절차	진행방식
신청접수(온라인) → 선정 → 자부담금 납입 → 업무협약 → 전문위원 매칭 → 사업수행(5~8MD) → 수행완료 → 완료점검 및 만족도조사 → 수입료 정산	foodbiz.or.kr 온라인 접수 및 수행관리

## □ 신청 방법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로 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

\* 모집기간 내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(접수 순서로 진행)

○ 제출서류 : 지원 신청서(aT 서식) 및 구비서류

\* 구비서류: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, 매출증빙자료(재무제표 등 최근 2년간),  
원산지 표기된 표시사항 견본 등

○ 접수처 :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(www.foodbiz.or.kr) 온라인 접수

① (회원가입) 로그인시 aT 홈페이지 통합회원 연결(개인/법인사업자 가입)

② (기존회원) foodbiz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>회원가입정보변경

→ 식품기업 부가정보 입력(회원종류 : 식품기업) 클릭 정보입력

③ 모집공고 → 제목 “2019 식품 품질·위생 단기역량제고 지원업체 모집공고” 선택

→ 온라인 신청 → 작성 제출

○ 문의처 :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기업컨설팅부 ☎ 02-6300-1734, 1733

## □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
○ 전문위원 매칭 : 선정(자부담금 완납)후 온라인을 통한 자유 매칭

- 직무기술서 정보 제공 방식으로 수진업체에 전문위원 선택권을 제공

- 수진업체 미 선택 시 분야별 전문위원 풀에서 공사가 직접 매칭

- 과거 동일분야 코칭 경력이 있는 업체와 전문위원 재매칭 불가

○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대기업집단) 제외

○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

○ 타 지원기관의 유사·중복사업에 선정되어 신청하거나, 관련 용역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
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,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, 수행중, 완료 이후라도 제외 가능
  - \* 기업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  - \*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 - \*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  - \*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-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수행기간 중 임의 사업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 제외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- 창업지원 업체 중 1년 이내 업체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제출 제외
- 창업기업 및 사회적 기업 대상기업
  - 소규모기업(최근년도 매출 1억 미만), 신규창업(창업 1년이내)
  -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기업
-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멘토링 수행기간 중 임의로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 함